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2025학년도 제4회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10인	2인
재적임원	10인	2인
참석임원	9인	1인

1. 일 시 : 2026.2.10.(화) 10:30 ~ 12:00 (회의소집통보일: 2026.2.2.)

2. 장 소 : 서울 POSCO센터 서관 19층 회의실

3. 임원 출 · 결 사항

가. 참석 임원

- 이사(9인): 이사장 장인화, 이사 정민근, 이사 허염, 이사 이우일, 이사 장지상,
이사 김진한, 이사 김성근, 이사 주세돈, 이사 홍석표

- 감사(1인): 감사 오엽록

나. 결석 임원(2인): 이사 송정현, 감사 송우진

4. 안건

가. 의결안건

- ① 상근임원(부이사장) 선임안
- ② 2026학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③ 2026학년도 교원 인력운영 계획안
- ④ 2026학년도 예산안

이사 장지상 

이사 김성근 

이사 주세돈 

- ⑤ 반도체공학과 대학원 폐지안
- ⑥ 정관 변경안
- ⑦ 대체투자상품 대손상각안
- ⑧ 2025회계연도 고정자산 폐기안

5. 개회선언

당 법인 정관 제29조의 소정 절차에 의거한 2026.2.2. 소집통보에 따라 장인화 이사장은 금일 10:30의 이사회가 정관 제27조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6. 회의내용

가. 의결안건

① 상근임원(부이사장) 선임안

이사장은 상근임원(부이사장) 선임안을 발의하고 황희선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다. 안건 심의에 앞서 정관 제28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에 의거 주세돈 이사는 퇴장하다.

안건에 대해 논의 후 이우일 이사의 동의, 김진한 이사의 재청을 거쳐 주세돈 이사를 제외한 참석이사 8명 전원의 찬성으로, 상근임원(부이사장) 선임안을 아래의 의결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의결 후 주세돈 이사 재입장)

【의결 내용】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상근임원(부이사장) 선임안을 다음과 같이 승인·의결함.

1. 상근임원(부이사장): 주세돈 이사 (1961.6.14. 生)

이사 장지상  이사 김성근 

이사 주세돈 

2. 관장업무: 「이사회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지침」, 「직제 및 권한 규정」에 부이사장의 역할로 규정된 사항
3. 임기: 2026.3.16.~ 2027.3.15.
4. 보수 및 대우: 이사장에게 위임

② 2026학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사장은 2026학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발의하고 황희선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다.

허염 이사는 유가증권의 재투자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 이연되도록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고, 포트폴리오 개선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다.

장지상 이사는 포트폴리오 개선 및 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전문 인력이 충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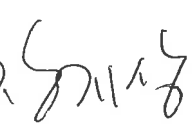
김진한 이사는 법인 보유 주식 매각 시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매각시점을 전략적으로 잘 검토하여 줄 것과 추후 이사회에서 주식 매각을 의결할 때 장기적인 주가변동 자료 등 검토자료를 잘 준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다.

이후 정민근 이사의 동의, 김진한 이사의 재청을 거쳐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2026학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아래의 의결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의결 내용】

2026학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의결함.

□ 기금운용 목표수익률: 4.3%(현금수입 260억원)

이사 장지상  이사 김성근  이사 주세돈 

□ 기금운용방향

○ 포스텍2.0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정 유동성 확보

○ 채권, 대체투자 등 투자상품의 리스크 관리 강화

○ 투자재원 확보시 우량채권, 중위험-중수익 대체상품, 주식형펀드 등 투자

※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세부 실행은 법인 상근경영층에 위임

③ 2026학년도 교원 인력운영 계획안

이사장은 2026학년도 교원 인력운영 계획안을 발의하고 이종봉 교무처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다.

이후 허염 이사의 동의, 장지상 이사의 재청을 거쳐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2026학년도 교원 인력운영 계획안을 원안대로 아래의 의결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의결 내용】

2026학년도 교원 인력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의결함.

□ 주요 내용

○ 전임교원은 전체 320명('27.2월말 기준) 수준으로 운영

구분	2025 학년도	2026 학년도
전임교원	313 명*	320 명*

※ 별도정원(10명): 에너지소재 5명, 수소 1명, 반도체공학과 4명

○ 교비 지원 비전임교원은 30명 수준으로 운영

구분	2025 학년도	2026 학년도
대우교수 (교비 지원)	30 명	30 명

이사 장지상 

이사 김성근 

이사 주세돈 

④ 2026학년도 예산안

이사장은 2026학년도 예산안을 발의하고 황희선 본부장, 송민석 기획처장, 박재현 가속기연구소장 직무대행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다.

허염 이사와 이우일 이사는 포스텍의 연구 수주 실적이 국내 최고 수준인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 수주를 장려하기 위해 교원 인센티브 제도를 잘 설계하는 등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다.

장지상 이사는 연구기반의 창업, 기술사업화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힘써줄 것을 당부하다.

이후 장지상 이사의 동의, 홍석표 이사의 재청을 거쳐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2026학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아래의 의결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의결 내용】

2026학년도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승인·의결함.

(억원)

수입				지출			
구분	법인	대학	가속기 연구소	구분	법인	대학	가속기 연구소
당기 수입	2,739	3,128	1,661	당기 지출	1,857	3,387	3,186
전기 이월자금	20	716	1,572	차기 이월자금	902	457	47
합계	2,759	3,844	3,233	합계	2,759	3,844	3,233

이사 장지상  이사 김성근  이사 주세돈 

※ 산학협력단은 독립법인으로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별도 승인·의결하므로 본 의결주문에서는 제외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의 2026학년도 예산 총칙을 다음과 같이 승인·의결함.

제1조 (자금예산의 규모)

- ① 2026회계연도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의 수입과 지출 예산총액은 각각 2,759억원으로 한다.
- ② 자금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명세는 수입·지출 명세서와 같다.

제2조(예산편성방향 및 주요추진사업)

- ① 대학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
- ② 중기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

제3조(주요사업)

- ① 안정적인 대학 경상운영비 지원 625억원
- ② 연구수월성 및 학생 복지 등을 위한 특별 사업지원 422억원

제4조(예산 전용)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 1항에 의거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제5조(차입금의 한도액) 장기 및 단기 차입금의 한도액은 0원으로 한다.

포항공과대학교의 2026학년도 예산 총칙을 다음과 같이 승인·의결함.

제1조 (자금예산의 규모)

- ① 2026회계연도 포항공과대학교 교비회계 총액은 수입과 지출 각각 3,844억원으로 한다.
- ② 자금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명세는 수입·지출 명세서와 같다.

제2조(예산편성방향 및 주요추진사업) ※ 주요추진사업 개요 별첨

- ① 제2건학 사업과 대학 중장기 계획에 근거한 사업에 최우선 투자
- ② 기 확정된 사업들도 예외없이 사업계획 검토 후 재배정
- ③ 정부 및 지자체 대학지원 사업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재정 확충과 투자 성과 극대화
- ④ 관행적 지출 항목과 경상비 등의 지속적인 절감 및 운영 효율화로 재정 건전성 확보

제3조(차입금의 한도액) 장기 및 단기 차입금의 한도액은 0원으로 한다.

이사 장지상  이사 김성근  이사 주세돈 

제4조(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사업에 참여하며, 책무 이행 및 반환 등의 기준은 협약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97(24.1.9) 근거

제5조(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①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특례규칙 제13조 1항에 의거,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 ②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및 예산초과지출항목 발생 시 충당한다.
- ③ 기타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특례규칙에 의한다.

⑤ 반도체공학과 대학원 폐지안

이사장은 반도체공학과 대학원 폐지안을 발의하고 이종봉 교무처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다.

정민근 이사는 반도체공학과 대학원 폐지에 따라 반도체대학원에서 운영하게 될 반도체공학과 학부 연계 석사 및 박사과정을 잘 운영하여 주기를 당부하다.

이후 이우일 이사의 동의, 허염 이사의 재청을 거쳐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반도체공학과 대학원 폐지안을 원안대로 아래의 의결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의결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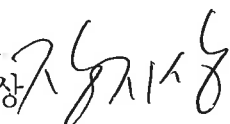
반도체공학과 대학원과정 폐지안을 아래와 같이 승인·의결함.

□ 의결 내용: 반도체공학과 대학원과정 폐지

※ 반도체공학과 대학원 폐지 후, 반도체대학원 통합운영에 따라

반도체대학원을 전자컴퓨터융합공학부 내 편입

□ 폐지일: 2026.2.28.부.

이사 장지상 

이사 김성근 

이사 주세돈 

⑥ 정관 변경안

이사장은 정관 변경안을 발의하고 황희선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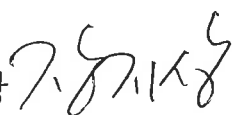
이후 김진한 이사의 동의, 홍석표 이사의 재청을 거쳐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정관 변경안을 원안대로 아래의 의결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의결 내용】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정관」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승인·의결함.

1. 정관 변경 내용

현행	변경안
제 74 조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 년(<u>국가공무원법 제 78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년, 교육공무원법 제 52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 년</u>)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 74 조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 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u>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 78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 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 83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각 목, 「교육공무원법」 제 52 조 제 5 호 및 제 6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 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u>
제 87 조(학장 및 <u>주임교수</u>) 각 학부 또는 학과에는 학사운영 전반을 통괄하기 위하여 학부에는 학장, 학과에는 <u>주임교수</u> 를 둔다.	제 87 조(학장 및 <u>학과장</u>) 각 학부 또는 학과에는 학사운영 전반을 통괄하기 위하여 학부에는 학장, 학과에는 <u>학과장</u> 을 둔다.

이사 장지상 

이사 김성근 

이사 주세돈 

부칙	부칙
<신설>	이 정관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7 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2026.2.15.부

⑦ 대체투자상품 대손상각안

이사장은 대체투자상품 대손상각안을 발의하고 박태준
행정처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다.

이후 장지상 이사의 동의, 홍석표 이사의 재청을 거쳐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대체투자상품 대손상각안을 원안대로 아래의
의결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의결 내용】

청산 완료된 대체투자상품의 대손상각을 다음과 같이 승인·의결함.

☐ 대상펀드: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 204호(파생형)

☐ 대상금액: 777,149천원

⑧ 2025회계연도 고정자산 폐기안

이사장은 2025회계연도 고정자산 폐기안을 발의하고 박태준
행정처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다.

이후 정민근 이사의 동의, 허염 이사의 재청을 거쳐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2025회계연도 고정자산 폐기안을 원안대로 아래의
의결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이사 장지상  이사 김성근  이사 주세돈 

【의결 내용】

2025회계연도 고정자산 폐기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의결함.

(단위: 천원)

구분	수량(점)	취득가액 (A)	감가상각 누계액(B)	잔존가액 (A-B)
교비회계	352	12,011,375	△11,960,314	51,061

【대표 간서명】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회의록 작성 시 대표 간서명을 위한 임원을 선임하기로 하고, 장인화 이사장의 발의, 정민근 이사의 동의, 허염 이사의 재청을 거쳐 만장일치로 장지상 이사, 김성근 이사, 주세돈 이사 3인을 선임 의결하다.

이사 장지상



이사 김성근



이사 주세돈



7. 이사회 폐회

이상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언하다.

상기 결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 다음과 같이 기명, 서명하다.

2026년 2월 10일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이 사 장

장 인 화

이 사

정 민 근

이 사

허 염

이 사

이 우 일

이 사

장 지 상

이 사

김 진 한

이 사

김 성 근

이 사

주 세 돈

이 사

홍 석 표

감 사

오 엽 록